

대법원 2018. 10. 11 선고 2018다28327(본소), 2018다28334(반소) 판결 [건물명도 · 건물명도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8. 10. 11 선고 2018다28327, 2018다28334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29 선고 2016나48197, 2016나49527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7. 8 선고 2016가단35626 판결

전문

원고(반소피고), 상고인 겸 피상고인

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중혁

피고(반소원고), 피상고인 겸 상고인

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

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29. 선고 2016나48197(본소), 2016나49527(반소) 판결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[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](#)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위 [법 제5조](#)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18. 10. 11.

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재연 주 심 대법관 노정희